

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 이내
신청인	기관명		
	대표자	전화번호	
	소재지		
기관·단체 요건	[]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		
	[]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		
	[]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		
	[]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		

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(인력배치계획 및 자금조달·집행계획을 포함합니다) 2.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		수수료 없음	
처리 절차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 처리기관 (국토교통부)	→ 검토 처리기관 (국토교통부)	→ 결재 처리기관 (국토교통부)	→ 지정서 발급 처리기관 (국토교통부)